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100035-01



2026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CONTENTS

| | | |
|--------------|--------------------------|----|
| 0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 05 |
| 02 >> |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 47 |
| 03 >> |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 55 |
| 04 >> |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 63 |
| 05 >> | 관련 법령 | 67 |
|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 |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
| |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



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

새로운 유형의 부패를 통제해 국민 신뢰 확보 필요

-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충돌상황 관리, 통제장치 강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장치 미흡

- '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우선 도입했으나,
- 행정부에만 적용되고 제재수단도 징계로 한정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한계
- 이해충돌 방지규정 상향법제화 필요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 수준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 필요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이해충돌방지법의 의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적용 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공공기관 제2조제1호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공직자 제2조제2호

국가 공무원 · 지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 · 공립 학교장과 교직원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적용 대상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준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포함)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주요내용 : 10대 행위기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 신고·제출 의무 | | 제한·금지 행위 | |
|----------|-------------------------|----------|------------------------|
|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 1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2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2 | 가족 채용 제한 |
| 3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3 | 수익계약 체결 제한 |
| 4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5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제5조제1항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제5조제2항 |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참고 신고대상 16가지 직무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

감리, 감정평가, 형의 집행, 수형자의 지도·처우·계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참고 직무관련자 :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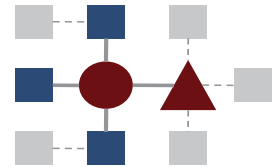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참고 사적 이해관계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참고 사적이해관계자 (계속)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 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했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 포함)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경우 제외)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3.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제7조제1항 | 조치 원칙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 | | |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

제7조제2항 | 조치 예외 사유

1.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 점검토록 조치 가능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제5조제3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적용 제외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민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인,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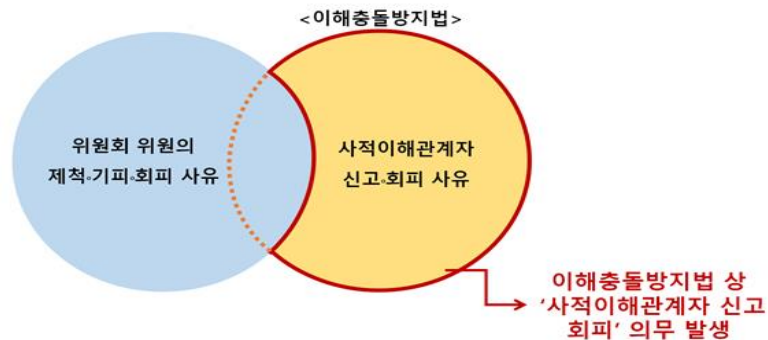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제5조제4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이행 간주

16개 유형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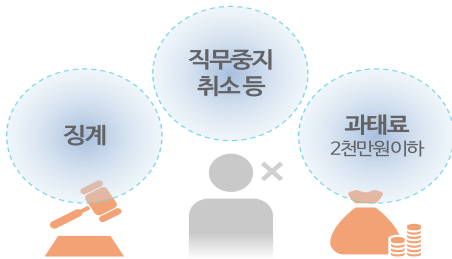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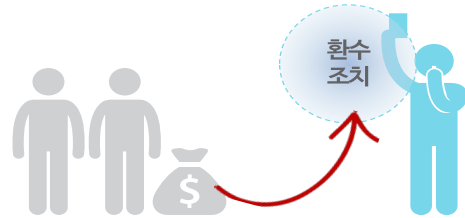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환수조치 (제22조)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조치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예시

상급자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A에게 주택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상대방이 공직자A를 지휘·감독하는 국장인 경우



형제자매가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퇴직한 지 2년 이내의 공직자(사적이해관계자)를 강연이나 심사에 초청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 ☞ 해당 퇴직자가 초청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지휘, 감독했던 상급자이고, 강연이나 심사에 초청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사적이해관계자(퇴직자 등)의 사업참여 제한, 등록 제한이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제한 등이 가능한지?

- ☞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근거 없음
- ☞ 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민원인이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이에 대해 담당자가 회신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해당 민원은 담당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에 해당한다며 담당자가 그 민원 회신 업무에 대해 회피하지 않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 회신 업무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지?

- ☞ 민원인이 형식적으로 소극행정 '신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해당 직무를 법 제 5조제1항 각 호의 신고 대상 직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해당 민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단순 민원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의 직계비속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임. 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님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회피의무 발생 시점 ('안 날'의 기준)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사건을 접수하거나 보고받는 등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

인·허가 신청, 신고·고발 접수 등으로 공직자의 직무 개시 시점이 명확한 경우,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라면 해당 인·허가 신청, 신고·고발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회피의무 발생

업무개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공직자 본인을 포함한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가 될 합리적 개연성이 높다면 해당 업무 착수 시점부터 회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회피 의무 종료 시점은?

☞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함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그 결과의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공직자는 자신이 의무적(법 제5조) 또는 자발적(시행령 제10조제3항)으로 신고·회피 신청한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언론 대응, 국회 보고 등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하여야 할 것임

신고·회피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와 관련해 내부 검토가 종결되고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회피 의무가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공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에 대한 조치

☞ (신고·회피신청)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함

(조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공기관장의 신고·회피신청에 대하여 직무대리자 지정(제7조제1항제2호)을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 등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운영원칙 등을 정한 법령·기준에 따름

【참고】

「**직무대리규정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신고·회피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직근 상급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함

(조치) 직근 상급자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신고·회피신청에 대해 직무대리자 지정 조치(법 제7조제1항)를 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정」 등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과 운영원칙 등을 정한 법령·기준에 따름

【참고】

「**직무대리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심사,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였어야 하는지?

☞ 해당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개정안의 **심사**(법 제5조제1항제15호)에 대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법령의 발의 및 본회의 표결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대상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조례개정안 발의 및 본회의 표결에 대하여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가족이 이전부터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해당 상임위 배정 시, 향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단, 상임위 배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 필요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한)

단순히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직자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발적 신고·회피 신청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참고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공공기관이 산하기관, 자회사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공직자를 산하기관, 자회사에 당연직 임원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는?

☞ 1) 당연직 임원 등으로 재직하게 된 근거가 공직자가 본래 소속된 기관의 법령·기준에 규정된 경우

또는

☞ 2) 산하기관, 자회사 등 법인·단체의 정관을 통해 당연직 임원 등을 겸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직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법령(조례·규칙 포함) 또는 원 소속기관의 기준*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한 경우

② 원 소속기관 또는 주무관청이 당연직 임원에 대한 정관을 인가

③ 공직자가 원 소속기관 등에서 당연직 임원 관련 겸직허가나 취임승인·인사발령(공문)을 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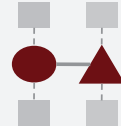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제1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② ①항의 기관 외에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보유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참고 시행령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0호~제37호 생략)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참고 시행령 제8조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함**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7조제1항 | 조치 원칙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제7조제2항 | 조치 예외 사유

- 1.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 점검토록 조치 가능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 통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참고 신고 받은 소속기관장의 신고·고발 의무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기관의 홍보 업무 담당자 등 부동산 개발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게도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 ☞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동산 개발 사업 정보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공지해야 하는지?

- ☞ 지구지정 후 보상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아야 할 실익이 없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신고대상 사업의 공지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부동산 개발 업무의 절차적 특성, 부동산 개발 업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소속 공직자들이 부동산 사업 정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 동안 공지할 필요가 있음

(예1) 공공주택사업 지정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지구지정 후 1~2년 내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보상시행 후 토지 매수 실익이 없음을 고려, 지구지정 후 보상 시행 전까지 약 1년간 공지

(예2) 재개발사업 승인권자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지구지정 후 10년 넘게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 지구지정 후 2년, 조합설립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약 3년간 공지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공개

제8조제1항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고위공직자 (제2조3호)

국가·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제10조)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업무활동 내역 포함사항 (제8조제2항)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제출의무 위반 시 조치

☑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 위반 시

징계(제26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지?

☞ 정무직공무원,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참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 ‘공개’ 대상자와 범위가 같음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0명인 기관도 있을 수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겸직 또는 겸임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법인단체에 재직했거나,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내역이 있거나 민간 사업을 관리·운영한 내역이 있다면 내역을 제출해야 함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부문 내역없음 확인서' 제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제8호)는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내역' 열과 '고위공직자' 열이 있으며, '직무활동'과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 하단에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2항, 제3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제8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별지제9호)는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에는 '내역' 열과 '고위공직자' 열이 있으며, '직무활동'과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 하단에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제2항, 제3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별지제9호)

or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부실하게 제출된 경우는?

- ☞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 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해야 함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는 필수인지?

☞ 현행법상, 소속기관장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법 제8조제4항)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①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②부동산 임대사업 ③정당활동을 한 경우, 업무활동내역 제출을 해야 하는지?

☞ 변호사 사무실 운영은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에 작성하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자신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사항에 대해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항목에 작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 경우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으로 작성

「정당법」에 근거한 비법인 사단이므로,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 이내에 당직을 맡아 정당 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항목에 작성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신고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



신고대상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거래 등 사적거래를 한다는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자 | 제9조제1항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신고대상 거래행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신고대상

**금전 및
유가증권 등**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금융회사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하는 행위 제외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공개모집 분양, 구매·경매·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계약 체결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 제외

위반자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7조제1항 | 조치 원칙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치



제7조제2항 | 조치 예외 사유

1.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 점검**토록 조치 가능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예 시



신고사건 담당 공직자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사할 목적으로
 사건 신고자(직무관련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위반 예시

- 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와 신청사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도지사의 부모님 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개인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신고한 사례
-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OO문화센터 대표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3,000만원을 빌리면서 해당 거래를 미신고
- 시장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시설 관리업체 대표와 대표 소유의 아파트를 개별 거래하면서 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제1항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 사적 접촉 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의무 위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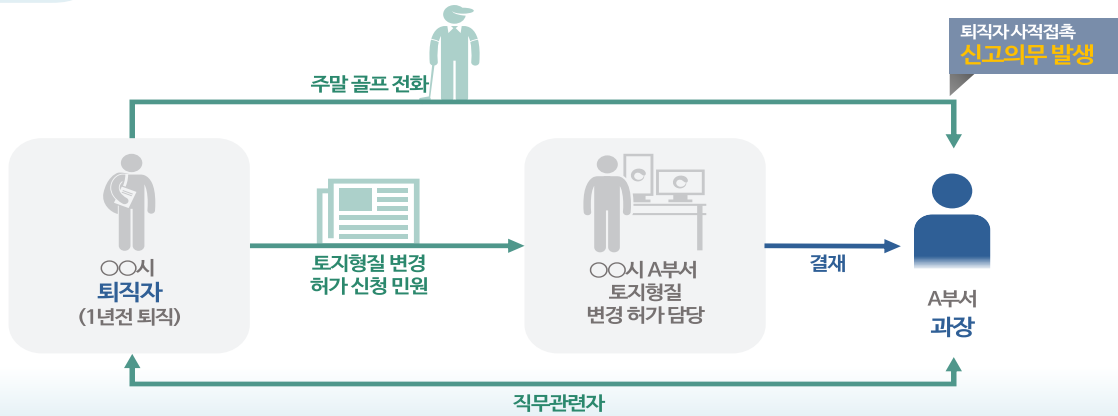
징계(제26조)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예시



OO시에서 근무하다 1년 전 퇴직한 자가
같은 시 A부서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A부서 과장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골프나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함
→ OO시 A부서 과장은 퇴직공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접촉사실을 신고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6.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제10조제1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조치

☑ 제한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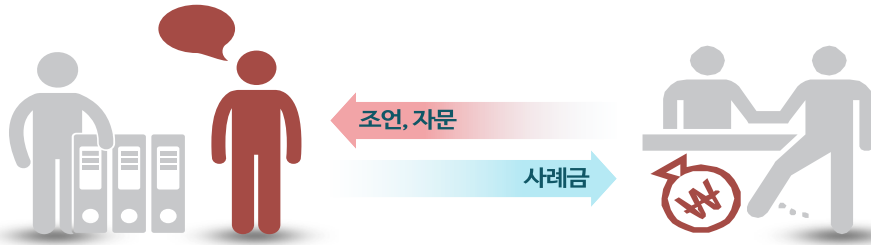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6.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예시



- ✓ A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A공공기관의 소속직원 부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 B공공기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중인 ○○부 송무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B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서면 자문 등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가 아닌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되므로, 특히 법 제10조제2호의 경우, 타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겸직 허가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겸직 허가를 받은 내용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 허가 시기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 ☞ 허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나, 사후 통보 형식은 허가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복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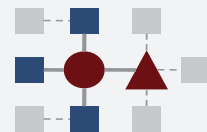
- ☞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외부활동 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타 법령·기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7.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제1항 |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위반 시 조치

☑ 제한 대상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제26조)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가족 채용 제한)

지방자치단체 훈령·예규에 따라 근로자를 공개경쟁채용한 경우,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법 제11조제2항은 다른 법령(조례·규칙,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가족채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훈령·예규가 조례·규칙의 위임을 받았거나 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훈령·예규에 따른 채용이 공개경쟁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해 채용제한대상자가 채용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가족 채용 제한)

법령이나 공공기관 인사관련 규정에 근거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도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지?

- ☞ 법 제11조제2항은 다른 법령(조례·규칙,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가족채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공개채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가족 채용 제한)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범위는?

-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 부서장, 국장, 본부장, 기관장 등 결재선상에 있는 자가 모두 해당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결재선 포함)의 가족은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하면 안되는지?

- ☞ 경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용할 수 없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받는 공직자 등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금지**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의 범위**
 (제12조제1항)



| | |
|---|---|
| 1 | 소속 고위공직자 |
| 2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 3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4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 5 |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등 |
| 6 |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 7 |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 8 |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 9 |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위반시 조치
 (제21조, 제26조, 제28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참고 신고·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

| 관련조문 | 가족의 범위 |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 |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자신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참고 법 제12조제1항 단서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사유

① (생략)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시



- ✓ 용역계약 시 소속기관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계약담당, 계약담당의 과장 등)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 지방의회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소속 지방의회, 산하기관 등이 자재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수차례 체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란?

공공기관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근거: 시행령 제14조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계약담당 공직자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 확인항목 | 확인결과 |
|--|---|
| 발주자의 소속 교육공무원, 배우자, 교육공무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계약 업무를 담당할 사업장 담당자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발주자(발주기관)의 공무원 소속 교육공무원, 배우자, 교육공무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발주자(발주기관)의 포괄사 소속 교육공무원, 배우자, 교육공무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지명(추천) 대상, 배후자, 지명(추천) 대상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공공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행의 제공자일 범위 또는 당해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공공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행의 제공자 제공자 사행(이)인 범위,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양계를 입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해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부수 총수액 100만원 ② 이익금 총수액 100만원 ③ 순이익 총수액 100만원 ④ 순이익 총수액 100만원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범위 또는 당해에 해당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액결제 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계약담당 공직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온라인쇼핑몰 구매, 유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판매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담당 공직자는 그 제한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계약 상대방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 A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B사업자가 대금을 수령하고 물품·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계약상대방인 B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함

(예1) 지방의회의원이 C업체를 운영하면서 D업체 사업자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 담당자는 D업체뿐만 아니라 C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수의계약은 제한됨

(예2)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인E의 등기상 대표는 제한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익계약 체결 제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급 광역자치단체 관할 광역의회의원의 가족과 수익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 등과 수익계약 체결이 제한됨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 출자·출연법인 등임(「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광역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바, 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상 수익계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익계약 체결은 불가능한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분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익계약 체결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예시]

- 관용차를 주말이나 휴가기간 등에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공용 비품을 기관장의 개인 공간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관의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위반 시 조치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제21조)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예시



-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이용
- ✓ ○○공공기관 감사실장은 자녀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량을 사용
-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을 공직자가 무단·무상으로 사용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예시

- 교육용 기자재(태블릿 PC, 스탠바이미), 무단 반출해 중고거래로 판매
-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민 테니스장, 시설관리자의 자녀가 예약 없이 수차례 사용
- 공공기관 회의실, 소속 직원이 겸직 중인 민간업체 회의장소로 무단 사용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원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에 공공기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 ☞ 기준 없이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기관 지침 등으로 사용 요건·방법 등이 규정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임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포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 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됨 (제1항)
- ②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제3항)

제3자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됨 (제2항)

* 미공개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사적 이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임. 예)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이용, 대학입시 관련 시험문제 유출·이용 등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시 조치

| 구분 | 금지행위 위반내용 | 처벌 |
|-----|---|---|
| 공직자 | 제1항 위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 | 제3항 위반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3자 | 제2항 위반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 몰수·추징 : 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빈발 질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위반 예시

-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 매입
-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 교육감이 자녀들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비밀리에 얻어 자녀들이 우수한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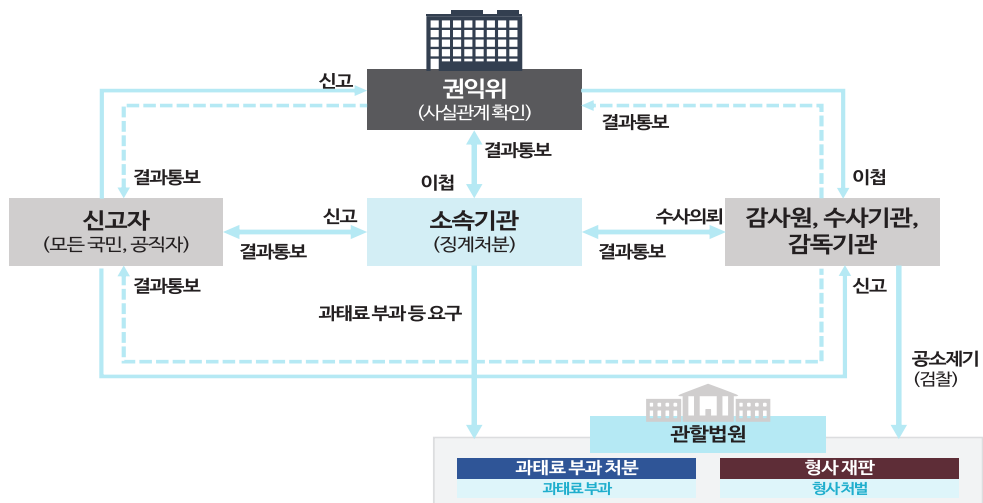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 취지 등을 밝힌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고,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
| 징계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 징계처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 형벌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14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14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 |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14③)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I.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계속)

|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
| 과태료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11) | 3천만 원 |
| | 수의계약 체결 금지를 위반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12) | |
| |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5) | 2천만 원 |
|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6) |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9) | |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10) | |
|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13) | 1천만 원 |
| |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8) | |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5) | | |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자진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신고자 보상

- 보상·포상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 가능,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신고자 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내용 |
|-----|--|-------------------------|
| 징계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공직자 (§26) | 징계처분 |
| 형벌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 (§27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27③2) <small>*「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small>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③3) | |
| |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7④1) | |
| 과태료 |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27④2) <small>*「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small>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8①3) | 3천만 원 |
| |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②6) | 2천만 원 |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빈발 질의 (위반시 제재 관련)

공공기관에서 모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임의로 신고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항들이 부재하거나 제24조(종결처리 등)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면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참고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빈발 질의 (위반시 제재 관련)

징계 절차를 통해 주의·경고 하였는데, 반드시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인지?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규범을 위반한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II. 위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

빈발 질의 (위반시 제재 관련)**징계의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데 과태료 통보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소속 공직자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에 통보시기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소속기관은 위반사실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불복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관할법원 통보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소멸 시효 경과 등 조치가 누락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임

03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III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요건에 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운영지침’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규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요건(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운영지침에 규정**

-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하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임명해야 함
 - * 독립적인 청렴·감사업무 등 권한이 없는 최하위 집행기관 단위까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추후 위반신고 신고자 정보 취급의 적절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된 소속기관은 본부와 별개로 공직자 의무신고를 직접 처리해야 함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 (법 제25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운영지침 제·개정

☑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표1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개정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24.8.14. 시행)에 따라 지침을 이미 제정한 기관도 지침 개정 필요
- 당해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조항은 생략 가능
 - * 고위공직자가 없는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조항 생략 가능,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의무 관련 조항 생략 가능
-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개정 시 국민권익위 통보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운영지침 제·개정

☑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주요 개정('24.8.14.) 사항

- **소속기관장의 신고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조치 명확화** (지침 제4조제4항)
 - 소속기관장의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
- **계속수행 조치 시 확인·점검 절차 및 방법 마련** (지침 제4조제5항)
 - 신고·신청한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의 확인·점검 방법 및 절차 규정(별지 제3호)
- **직무관련 외부활동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 관련 세부절차 마련** (지침 제9조)
 - 허가 신청 서식(별지 제11호)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직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서식(별지 제12호) 마련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 절차 마련** (지침 제7조제2항)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별지 제9호)를 별도의 서식으로 규정해 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하도록 해 원활한 제도 운영 지원
- **법상 주요내용 포함** (지침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 지침에 따로 규정되지 않았던 ① 법률상 공직자의 의무, ② 기관의 조치 사항 관련 내용 추가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 교육

-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이해충돌방지법 기관 자체교육용 영상자료'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의 '청렴교육 자료', '청렴교육 강사' 등 활용 가능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빈발 질의 (기관별 제도 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외부 인사를 지정해도 되는지?

-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시행령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함

Ⅲ. 기관별 제도운영 안내

빈발 질의 (기관별 제도 운영 관련)

이해충돌방지교육 의무를 꼭 기관 자체 교육으로 하여야 하는지,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할 수 있는지?

- ☞ 기관에서 자체 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면 될 것으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함. 단, 부패방지교육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교육 지침을 참고하여야 함

04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IV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IV.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주요 개정 사항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

사적이해관계법인의
확인·관리(제12조)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업무 개시
후 일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

허위·불성실 신고자
과태료 부과(제21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내역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향후 일정: '26. 하반기 국회 제출 추진

IV.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추진

주요 개정 사항

기타 개정사항

-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제10조)
-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제2조)
-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제19조)
- 비실명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제18조의2)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제20조의2)

05

관련 법령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044-200-76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할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

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91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74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044-200-767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외무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 ② 법 제2조제3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직자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란 별표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8조(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

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나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단체 등에 재직할 경우: 법인·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
 3. 사업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무관련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거래일
 4. 거래 내용
 5.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유형·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16조(신고 등의 기록·관리) 소속기관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7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나 개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1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와 신분공개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가 제1항제1호의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나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통보

제22조(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⑤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종결처리 등) ①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신고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를 한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신분보호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31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수사·조사·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다.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 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3조(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①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제35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35974호, 2025. 12. 30.>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청렴연수원”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한다.

② 생략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

부동산 개발 업무(제7조 관련)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101조의3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 및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및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및 승인,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26.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30. 「기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및 지정,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및 승인

3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36.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법인에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은 해당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 제36호 및 제37호는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 8. 1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044-200-7674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

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징계양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20호, 2024. 8.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4. 8. 1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 8. 14.,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팀), 044-200-767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제출·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대학
 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

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 제13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제18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징계양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

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20호, 2024. 8.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제2조제1항 관련)

(기관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〇〇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〇〇〇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〇〇〇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〇〇〇의 〇〇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〇〇〇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시)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예시) 〇〇〇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〇〇〇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〇〇〇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〇〇〇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000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000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 000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000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000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

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000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000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000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000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대학
5.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6.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000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000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000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000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000은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000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000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000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000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000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000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000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000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000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000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000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000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000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00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1 | 가덕도 신공항건설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0조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2조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
| 2 | 개발제한 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 | | | 제4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 제8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3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 | | | 제9조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4 |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조 |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
| | | | 제16조 |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17조 | 지구계획의 승인 |
| 5 | 공항시설 개발사업 | 「공항시설법」 | 제7조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 공항공정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6 |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제52조 | 관광지의 지정 |
| | | | 제54조 |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
| 7 | 국방·군사시설 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조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 | | |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 8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4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 제29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 | 제88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
| | |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

|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9 | 기업도시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4조 |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 | | | 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
| | | | 제12조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
| | | | |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
| 10 | 마을정비 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 제101조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 | | | 제103조 |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 | |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11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제17조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6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
| 12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3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
| | | |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 13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9조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
| | | | 제15조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 | | | 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 |
| 14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9조 | 정비계획의 입안 |
| | | | 제50조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 | 제52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 | | 제101조의3 |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
| | | | |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
| | | | |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
| 15 | 혁신지구 재생사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1조 |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
| | | | 제46조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
| | | | |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16 |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
| | | | 제13조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17 |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5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
| | | | |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 | | |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 |
| | | | 제28조의2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 18 | 물류단지 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 | | 제22조의2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 | | | 제28조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
| | | |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1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2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 | | | 제28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
| |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
| 2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12조 |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 | | 제13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 | | 제29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
| | | | 제30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21 | 산업단지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7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 |
| | | | 제8조의3 | 준산업단지의 지정 |
| | | | 제17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8조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8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 제40조의2 |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 | |

|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22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 「신항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가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11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
| | | | 제21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23 |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
| | | | 제11조의2 |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
| 24 | 역세권개발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 | | | 제13조 |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25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
| | | | 제27조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26 |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 | | | 제10조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 27 | 시장정비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33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
| | | | 제35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37조 |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
| 28 |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47조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 29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 제1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
| 30 | 로봇랜드 조성사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3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
| | | | 제31조 |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

| 연번 |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
|----|-----------|---------------------------|---------------|--|
| 31 | 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 | | | 제22조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
| | | | 제23조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제45조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
| 32 | 친수구역 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4조 | 친수구역의 지정 |
| | | | 제13조 |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33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
| | | | 제9조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34 | 항만재 개발 사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2조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
| | | | 제17조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35 | 혁신도시 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 | | | 제11조 |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
| 36 | 예비타당성 조사 | 「국가재정법」 |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의사업자규모 한정 |
| 37 | 예비타당성 조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3항 |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의사업자규모 한정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 ① 담당 업무 | |
|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 성명 | 소속 |
| | |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
| | 연락처 | ② 사적이해관계 |
| | ③ 관련 직무 | |
| | ④ 직무관련자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
| | 주소 | 연락처 |
| 업무 담당 공직자 | 성명 | 소속 |
| | ① 관련 직무 | |
|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 |
|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 |
| | |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
|--------|--|
| 성 명 | |
| 소 속 | |
| 직위(직급) | |
| 관련 직무 | |
| 의 견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 성명 | 소속 | 신고·신청일 |
|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신고·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 |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기타 참고사항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① 신고· 신청인 등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 |
|-------|--|
| 신고 유형 |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 | |
|--------|----|----|--------|
| 확인·점검자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 |
|---------------|--|
| ② 확인·점검 내용 | |
|---------------|--|

| | |
|---------------|--|
| ③ 확인·점검 결과 |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hr/>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월 ○○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청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① 담당 업무 | | |
| 직무관련자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 |
| 신청 사유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
|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 | 주소 | | |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 |
| 부동산 | 유형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일 | |
| | 소재지 | | |
|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참고자료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 |
|-----|--------|-----|
| 제출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임용일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 근무기간 | 명칭(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대리, 고문·자문 등

| 활동기간 | 기관명(소재지)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 | 업체명(소재지) | 직위(직급) | 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 | | |
|-----|--------|-------------|
| 제출인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임용일(임기 개시일) |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거래자 | 성명 | 신고인과의 관계 | |
| |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 |
| 거래상대방 | 성명 | 소속 | 연락처 |
| |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 | |
|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 |
| 거래내용 |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 | |
| | 계약체결일 | 상환기일 | |
| | 거래금액(이율) | 거래원인 | |
| |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 | |
| | 계약체결일 | 거래대상 | |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 | |
| | 계약체결일 | 계약사항 | |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 ① 요청인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 ② 외부활동 유형 |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
| 외부활동 내용 | ③ 외부활동 주제 | | |
| | ④ 외부활동 방법 | | |
| | ⑤ 외부활동 일시 | ⑥ 일괄신고 | |
| | 20 ~ 20 |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 |
| ⑦ 사례금 | | | |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언론사 요청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법인을 대리해 ○○에 관한 소송 수행
3) ○○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 ④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 ⑤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 ⑥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 ⑦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 | 채용사유 | | |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② 예외 해당 여부 |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소속 |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고인 | 성명 | 소속 |
| | |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 (퇴직자) | 성명 | 연락처 |
| | 현 소속 기관 | 퇴직 전 소속 기관 |
| |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 | | |
| 접촉 사항 | 일시 | 사유 |
| |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 비용부담자 |
| 참고자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신고자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 연락처 |
| | 직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 | |
|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 |
| | 성명 | 연락처 |
| |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 성명 | 연락처 |
| | 직업 | |
| 명칭(법인 또는 단체) | | 소재지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 성명 | 연락처 | 직업 |
|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 | |
| 위반행위 신고 | 신고경위 및 이유 | |
| | 일시 | 내용 |
| | 장소 | |
| 증거자료 |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신고인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 | |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이첩·송부 일자 | 이첩·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신고사항 | 피신고자 성명 | 피신고자 소속기관 | 피신고자 연락처 |
| | 신고내용 | | |
| 종결처리 |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 | |
| | 종결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
| 기타 사항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2026년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